

## 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

「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규칙안」의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1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규칙안 [장인수 의원 대표발의]

#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칙의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골자

연번	해당 자치법규	인용조문 개정내용
1	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	지방자치법 제41조 → 제49조 등
2	오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	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→ 제59조

#### 3. 규칙안 : 붙임

##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2년 1월 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447-701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## 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규칙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#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규칙안

## (장인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8-631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12월 30일

발의의원 : 장인수, 김영희, 김명철, 이상복,  
성길용, 이성혁, 한은경 의원

### 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칙의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연번	해당 자치법규	인용조문 개정내용
1	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	지방자치법 제41조 → 제49조 등
2	오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	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→ 제59조

##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규칙안

제1조(「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”로,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같은법 시행령 제39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”로,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3조제5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6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3조제5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

시행령」 제46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5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5항”으로, “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5호서식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6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오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의 개정) 오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. 1. 30>, <개정 2022. 1. 13>

년 월 일

받 음 : 오산시의회의장  
제 목 : ○○○○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

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○○○○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합니다.

덧 붙 임 : ○○○○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서

발의자 의원 : ○ ○ ○ (인)

외 ○인

(찬성자서명 별첨)

---

○○○○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서

발의년월일 :     년   월   일  
발 의 자 : 의원 ○○○외 ○인

1. 목    적
2.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할 사안의 범위
3.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  
  가.  
  나.
4. 발의이유에 대한 입증자료
5.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
6. 기타 필요한 사항

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15. 1. 30>, <개정 2022. 1. 13>

현 지 확 인 실 시 통 보 서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문서번호

받      음

제      목    ○○○○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

제○○회 오산시의회(임시회) 제○차 본회의(    년    월    일)에서 ○○○  
○년도 행정사무감사(조사)와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
[46조제1항](#), 「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  
여 아래와 같이 ○○○○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준  
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현지확인 일시
2. 현지확인 장소
3. 현지확인반 구성
4. 현지확인 대상
5. 현지확인 방법    끝.

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5. 1. 30>, <개정 2022. 1. 13>

서 류 제 출 요 구 서

귀하

오산시의회가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또는 조사)를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, 「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제출서류사항 :

2. 제출일시 :       년       월       일       시

3. 제출장소 :

4. 기타 필요한 사항 :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월       일

오 산 시 의 회 의 장 (인)



##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15. 1. 30>, <개정 2022. 1. 13>

### 증인 출석 요구서

귀하

오산시의회가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또는 조사)를 실시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, 「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요구서를 발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출석일시 :       년       월       일       시

2. 출석장소 :

3. 신문사항 :

4. 기타 필요한 사항 :

※ 출석하실 때에는 증인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, 그리고 인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      월       일

오 산 시 의 회 의 장 (인)

##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10호서식]〈개정 2015. 1. 30〉,〈개정 2022. 1. 13〉

### 선 서 (기관장)

본인은 오산시의회가 「지방자치법 제4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」 「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(또는 제3조)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(또는 조사)를 받을 것이며,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」과 「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기 관 명 :

기 관 장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11호서식]〈개정 2015. 1. 30〉,〈개정 2022. 1. 13〉

선 서 (증인)

본인은 오산시의회가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또는 조사)와 관련하여 ○○위원회에 서 증언을 함에 있어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6조제6항과 「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
주민등록번호 :

##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5. 1. 30>, <개정 2022. 1. 13>

###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

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오산시의회가 ○○○○년도 행정사무감사(또는 조사)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.

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,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「형사소송법」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,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오 산 시 의 회  
○ ○ 위원회 (감사반)  
위원장(반장) ○ ○ ○

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15호서식]〈개정 2015. 1. 30〉,〈개정 2022. 1. 13〉

감사 또는 조사중지 의결에 대한 이의서

1. 이의신청 의결내용 :
2. 신청취지 :
3. 신청이유 :
4. 근거법류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9조제3항, 「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3항

위와 같이 이의서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이의신청인    의원    ○ ○ ○    (인)

오산시의회의장 귀하

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16호서식]〈개정 2015. 1. 30〉,〈개정 2022. 1. 13〉

회 피 신 청 서

1. 회피신청감사 또는 조사사안 :
2. 신청취지 :
3. 신청이유 :
4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9조제4항, 「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4항

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이의신청인 의원 ○ ○ ○ (인)

오산시의회의장 귀하

**오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 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